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40

발의연월일: 2026년 9월 16일
발 의 자 남진삼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김광성 의원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선임절차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당·여비 등 실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수 및 선임절차 정비(안 제2조, 제3조)

위원 수를 7명으로 명확히 하고, 군수가 의회에 위원 선임을 의뢰하도록 선임절차를 정비함.

나. 결산검사위원의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4조)

공무원 및 의원의 가족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구체화함

다. 검사기간 연장(안 제5조)

검사기간 연장 시 의장의 승인으로 처리

라. 결산검사위원 수당·여비 등 지급기준 정비(안 제11조)

실제 검사기간을 기준으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8. 27. ~ 9. 4.(의회사무과-3652), 표참고

의회원안	집행부의견(회계과)	검토안
제2조(위원의 수)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2조(위원의 수)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부분수용)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함. 따라서 군수가 위원의 수를 정하여 의회에 선임을 의뢰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여 법령 및 조례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수용하지 않음,
제3조(선임방법 등) ③ 군수는 의회에 위원 선임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위촉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제3조(선임방법 등) ③ 군수는 의회에 위원의 수를 정하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위촉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 3분의 1 이하의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하는 의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원이 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을 지명한다.	이 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을 지명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와”로 한다.

제2조 중 “5명에서 7명이내로”를 “7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장은 선임된 위원의 명단을 군수에게 알리고, 군수는”을 “군수는 의회에 위원 선임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친지”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본회의의 의결로”을 “의장의 승인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기간(이하 “위촉기간”이라 한다)”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을 “대표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군수가”를 “의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적절한 기일 전”을 “전 적절한 기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군수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 ---------- ---------- ---------- ---------- ----------.
제2조(위원의 수)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에서 7명이내로 한다.	제2조(위원의 수) ---------- ---------- ---------- ---------- ---------- ---------- ---------- 7명으로 ---.
제3조(선임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의 명단을 군수에게 알리고, 군수는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위촉장을 별지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제3조(선임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의회에 위원 선임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장은 ---- ---------- ---------- ----------.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의회의원(이하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 ① ---- ---------- ----------

“의원”이라 한다)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2. ----------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의원의 배우자·친지 또는 형제·자매	3. ----- 배우자·직계존비속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 및 위촉기간) ①·② (생 략)	제5조(검사 및 위촉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기간은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의 특별한 사유로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일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③ ---------- ------- 의장의 승인으로---------- ----------. <단서 삭제>

④ 위원의 위촉기간(이하 “위촉기간”이라 한다)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제9조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 위촉기간---------- ---------- ---------- ---------- -.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대표위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 -- 의장이 ---------- ----------.
제7조(설명·교육 등) ① 군수는 위원에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전단에 따른 설명·교육 등을 할 경우에는 검사업무 개시 적절한 기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7조(설명·교육 등) ① ------ ---------- ---------- ---------- ------- 전 적절한 기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위원에게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원 아닌 위원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석하는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	제11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한다.

는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검사기간 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삭 제>
④ 수당 및 제3항에 따른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삭 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11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회계과장 손영미
연락처	(033) 330 - 2123